



독립 학문으로서 교회법



인 Han동일
☞ 바티칸 대법원 로타로마나 변호사

가을호에서 살펴보게 될 근대 시기의 교회법은 교회 국가라는 개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국가라는 개념은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의 개혁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뿐만 아니라 성직자들도 자신의 권위 아래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황제도 영적인 스승인 자신의 권위 아래 있다고 보았지요. 오늘날 개념에서 천주교 신자와 주교와 신부들이 당연히 교황의 권위 아래 있는 게 당연한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11세기 말 이전까지만 해도 로마 가톨릭교회의 주교, 사제, 수도자들은 원칙적으로 교황권보다는 황제와 왕들, 봉건 영주의 권위와 권한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울러 교회 재산 대부분도 황제와 왕들, 봉건 영주들에게 속해 있었고, 주교 임명과 같은 교회 인사권도 그들이 좌지우지하여 그들의 친인척을 고위 성직자에 임명하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교황의 '수위권'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시기에는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으며, 성직자들이 결혼하고 축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니콜라이즘(Nicholaism)이라 불렀는데, 성직자의 결혼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를 파생했는데, 무엇보다 사제의 결혼은 사제직의 세습이라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목사 세습'이라는 문제가 이미 중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결혼은 가족, 친인척에 관한 문제를 파생하였고, 지역 영주 및 세속 권력과 결탁하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교회 쇄신을 위해 사제 독신제를 과감하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서방 교회 사제들이 독신으로 살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를 교황 혁명 또는 교황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III. 근대 시기의 교회법(1563~1789)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이후 '보편 교회법'의 전형적인 형태는 교황이 제정한 법률과 교황청의 다양한 부서(성청)의 규범들이었으나, 모든 보편법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은 아닙니다. 보편 교회법이란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교회의 최고 권위, 즉 교황과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¹⁾ 교황의 교서는 학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교황 대칙서집(Bullarium)'에서 발견되었고, 각 성청의 규범들은 개인의 출판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도 있었지요. 이때의 교황 대칙서집은 대부분 학자의 개인적 연구로 작성한 것이기에 공식적인 권위를 갖지는 못 했습니다. 최초의 대칙서집은 1586년 래티우스 케루비니(Laetius Cherubini)의

<룩셈부르크 교황 대칙서집(Luxemburg Bullarium)>입니다. 그 뒤 마이나르디(Mainardi)의 <로마 교황 대칙서집(Bullarium Romanum)>(1733~1762)과 <토리노 대칙서집(Turin Bullarium)>(1857~1885)이 있었습니다.²⁾

당시로서는 헌법에 해당하는 '교황들의 법령'에 대한 강의는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대학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주교좌성당 앞 마당에서 책들을 태울 때 가장 먼저 태운 것이 교회법과 관련된 저작들이었지요. 불태워진 책 가운데 교회법의 역사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책들은 「교회법대전(Corpus Iuris Can-

1) 교회법 제12조 참조.

2) 백민관 엮음, 「가톨릭에 관한 모든 것 백과사전 1」, 가톨릭대학출판부, 2007, 407쪽 참조.

onici)과 「안젤로의 양심 문제에 관한 전집Summa Angelica de casibus conscientiae)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프로테스탄트 대학에서 교회법학은 사라지고, 그 영향으로 교회법이 일반 시민법에 끼친 광범위한 영향도 잊었습니다. 이 영향은 단순히 개신교 대학에서 교회법학이 사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개신교단 내에서 교회법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개신교에 일어나는 수많은 법률적 어려움은 이때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절대주의 왕정의 틀 안에서 교황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교회법 연구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동시에 인문주의 학풍에 고무된 역사 비평 방법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학문적 풍토는 교회법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교회법사 전문가들이 교황권의 예속에서 벗어나 ‘갈리아주의’³⁾와 ‘안세니즘’⁴⁾의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파스키에 퀘스넬Pasquier Quesnel(1719년 사망)과 제게르 베른나르트 반 에스펜Zeger Bernard Van Espen(1728년 사망)을 꼽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절대주의의 사조는 당시 교회법에 대한 설명보다는 신법의 역사 연구를 장려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스페인과 벨기에, 독일의 가톨릭 지역에서 교회법 연구는 계몽주의 사조와 함께 절대주의 시기까지 번영했지요. 사실 이 나라들에서 교회법 강의는 16~17세기 스페인에서 황금기를 맞았던 ‘후기 스콜라’의 가톨릭 신학과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후기 스콜라 가톨릭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자유롭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으며 자연법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 회랑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한편 교회법은 국가법과 국제법학 발전에 기여하면서 당시 윤리신학의 영역이었던 수많은 경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프란치스코 수아레즈Francisco Suárez(1617년 사망)의 「법과 입법자 하느님에 대한 논고Tractatus de legibus et Deo Legislatore」는 스페인 학자들의 이러한 학설을 종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⁵⁾ 특히 아고스티노 바르보사Agostino Barbosa(1649년 사망)와 프로스페로 파냐니Prospero Fagnani(1678년 사망)와 같은 저명한 주석가들은 역사 비평 학풍의 영향 아래 트리엔트 신학을 견지하면서 교회법을 좀더 비판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지요. 18세기의 교회법학자 중에서는 특별한 권위를 지니는 인물은 베네딕토 14세(재위 1740~1758)입니다. 그는 자신의 입법에 고유한 학문적 권위를 표현했습니다. 베네딕토 14세 교황은 당대의 유명한 교회법학자로서 2심과 그 이상의 심급에 있어 상소 법원의 성격을 명시하고,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의 관할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⁶⁾

3) 각주 61번 참조.

4) ‘안세니즘’은 아우구스티노의 주장을 강조한 신학 사상으로 원죄, 자유, 은총과 같은 주제에서 반가톨릭적인 입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상은 루벵 대학의 교수였던 안센이 1640년에 「아우구스티노」를 저술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나타나기 시작했다. 안세니즘은 17~18세기의 프랑스 교회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켜 로마 교황으로부터 수차례 이단異端 신고를 받았으며, 특히 「아우구스티노」의 내용 중 5개조는 인노첸시오 10세 교황에 의해 1653년 이단설로 신고받음과 동시에, 교회 분열 위기라는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돼 루이 14세 국왕이 안세니즘을 적대시하게 되었다. 안센은 당시 인문주의화한 프랑스의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엄격한 윤리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했고,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로 신성의 은혜를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학설을 부르짖었다. 특히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회 소속 신학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파스칼이 안세니즘의 입장에서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예수회 회원의 윤리론을 공격했던 일은 유명하다.

5) Cf. P. Erdö, op. cit., p. 1046.

6) 한동일, “사도좌 대법원 로타 로마나에 대한 고찰”, 93쪽 참조.



독일연방의회의사당 'Dem deutsche volke(독일 민족에게(바쳤다))'

16세기부터 가이우스Gaius의 「법학원론Institutiones」이 교회법의 방법론에 도입되었습니다. 파올로 란첼로티Paolo Lancelotti는 가이우스의 법학 원론의 체계에 따라 네 권으로 구성된 「교회법학 원론Institutiones iuris canonici」(1563)을 저술했습니다. 대인법De personis, 대물법De rebus, 소송법De iudiciis, 범죄와 형벌De criminibus et paenis로 구성된 「교회법학 원론」은 오래도록 교회법 강의의 대표적 교재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⁷⁾

1670년과 1758년 사이에 번영했던 독일 교회법학과는 대체로 에렌라이흐 피르링Ehrenreich Pirhing(1679년 사망)이 제시한 방법론을 따랐고, 아나클레트 파이펜스투엘Anaklet Peiffenstuel(1703년 사망)과 프란츠 사비에르 슈말츠그뤼버Franz Xavier Schmalzgrüber(1735년 사망)와 같은 자랑할 만한 학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법학자는 자기들 작품의 완성도와 신앙의 정통을 위해 새로운 제정법 및 교황청의 판례를 풍부하게 인용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황청 대법원 로타 로마나로부터 ‘검증된 권위자auctores probati’로

7) Cf. F. del Giudice, *Dizionario giuridico romano*, Napoli: Simone Edizione, 2010, p. 225.

인정받게 되지요. 그러나 이 시기의 교회법 교육은 ‘주교단 우위설episcopalismo’⁸⁾ 과 갈리아주의, ‘요셉주의Giuseppinismo’⁹⁾ 등의 정신에 심취해 있었고, 교회의 법은 국가 권한의 개입이라는 의미에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강의 과목은 이성의 원리들로 축소되었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교회법에 대한 설명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법은 많은 지역에서 선택과목으로 전락하고 맙니다.¹⁰⁾

8) 주교단 우위설인 ‘에피스코팔리즘(Episcopalismus)’은 세계의 전체 주교와 공의회에서 주교들이 교황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과 운동을 지칭한다. 에피스코팔리즘은 주교단이 교황보다 우위라는 주장으로, 로마의 중앙집권주의와 교황의 수위권에 반대하는 프랑스에서 나타났다. 프랑스 가톨릭교회는 갈리아주의, 즉 ‘프랑스 교회를 위해’ 교황의 수위권을 크게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갈리아주의(갈리카니즘)와 함께 국가절대주의, 안세니즘, 에피스코팔리즘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이 같은 저항은 제1차 바티칸공의회가 열리기까지 교회를 끈질기게 괴롭혀 왔다. 일명 ‘주교주의’ 또는 ‘주교단 우위설’로도 불리는 에피스코팔리즘은 13세기 절정을 이룬 교황권의 정치적 발전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반동에는 아우구스티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 중심적인 고대의 영성적인 교회 이념이 12세기 영성주의자들에게 의해 새롭게 각성되고 비슷한 시기에 존속된 단체적 교회 이념에 대한 의식이 주요한 이유를 형성했다. 여기에 13세기 교황청 교회법 학자들이 교황 권력의 증대와 교황의 전권을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발이 극단적인 공의회 우위설로 발전했고, 14세기 프랑스와 독일에서 국교회적이고 왕권 절대주의적인 이념이 관철됨으로써 에피스코팔리즘은 그 본격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

9) ‘요셉주의’는 오스트리아 황제 요셉 2세(재위 1741~1790)의 종교정책으로, 이에 따르면 국가는 교회에 대한 간섭권, 우위권을 갖는다고 한다. 황제는 교회의 재산 대부분을 몰수하고, 교회에 바쳐지는 모든 기금을 종교기금에 통합시켜 공공의 종교활동비에 총당하려 했다. 이를 위해 황제는 모든 수도원을 해산시켜서 세속용으로 불하였다. 양초에 관한 규칙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간섭한 요셉 2세는 ‘제의실의 황제’라고 불렸다.

10) Cf. P. Erdő, op. cit., pp. 1046~1047.



베를린 돔 초빙글리와 루터 동상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은 여전히 스킨라 철학에 기초한 강력한 '교회국가Kirchenstaat'로 방향을 모색했고, 마침내 교회법전이 제정되기에 이릅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합리주의 이성에 기초하여, 통일되고 정형화된 교회법 체계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르틴 루터(1483년 11월 10일~1546년 2월 18일)의 3S, 즉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총sola gratia, 오직 믿음 sola fide”이라는 신학 사상에 따라 순수 사랑의 신앙 공동체에는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 때문이었지요. 이러한 주장은 1520년 12월 10일 독일 작센 지방의 수도승 루터가 비텐베르크 주교좌성당 앞마당에서 책들을 불태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celebri 장작더미’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개신교에서 교회법이 사라지는데, 불태워진 모든 책 가운데 법의 역사에서 관심을 갖는 책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교회법대전Corpus Iuris Canonici」과 「안젤로의 양심 문제에 관한 전집Summa Angelica de casibus conscientiae」입니다. 루터는 고전기 교회법의 법률적 내용을 담은 전집인 「교회법대전」은 교회에 대한 ‘왜곡된 관계’를 나타낸다고 여겼습니다. 아이슬레벤의 수도승 루터는 법을 제정하기 위한 선택은 그 자체로 최고 권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를 ‘바빌론 유수captivitas babylonica’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바빌론 유수’라는 의미는 교회가 “현세의 그릇된 희망에 사로잡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이라는 최상의 법과 교회의 초월적 목적, 천상 왕국에 이르기 위한 인도를 망각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¹¹⁾

11) Cf. P. Grossi, *L'Europa del diritto*, 7 ed., Laterza, Bari 2011, p. 88.



슈퍼맨 루터

두 번째 책인 「안젤로의 양심 문제에 관한 전집」은 피에 몬테 출신의 프란치스코회 수사인 키바소의 안젤로 Angelo da Chivasso가 고해자들을 위해 쓴 작은 편람으로 1487년 베네치아에서 초판 발행되었습니다.¹²⁾ 두 번째 책은 분명 앞의 책과 비교해 중요도 면에서 관심이 덜 갈 수 있지만, 루터는 교회와 교회의 교계 및 조직 구조에 대해 느꼈던 모든 문제점이 그 책의 내용 안에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루터는 두 책을 모두 태우면서 원칙적으로 중세에 기원을 둔 성사를 단죄했습니다. 루터는 참회자의 죄 사함이 온전히 성직자의 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성사는 신자들을 성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

고 소개했습니다.¹³⁾ 그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부터 끊임없이 있어왔던 인류학적 선택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거룩한 사회 *societas sacra*’가 교회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보았지요. 그런 교회의 구조 안에는 신자를 포함하여 공동체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 지상세계의 방법 가운데 법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선택한 법에 대해 반대하는 비난을 하였습니다.¹⁴⁾ 그런 까닭에 루터와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법을 단죄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법학을 세속 권력, 곧 죄인이 공부를 선택한 ‘사악한 그리스도인 *cattivi cristiani*’으로 묘사하여 법과 법학자의 감소를 불러왔습니다. 아울러 마르틴 루터의 이러한 이상은 오늘날 한국 개신교계에 교회의 재산법 분야, 목회자의 선임과 세습 문제에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역사적 원인을 제공하는 단초가 됩니다.

12) A. De Clavasio, *Summa Angelica de casibus conscientiae*, impressa per Georgium de Rivabensis Mantuanum, Venetiji 1487.

13) P. Grossi, op. cit., pp. 88~89.

14) P. Grossi, *L'Ordine giuridico medievale*, 6 ed., Laterza, Bari 2011, pp. 109~116.